

입소정원 및 이용과 모집방법에 관한사항

(단기보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시 설 명	카네이션 요양원	급여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
대 표	이 영 주	전화번호	031-829-1307
고유번호	659-80-00333	장기요양기관기호	3-41150-00528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14 5층 (녹양동, 센츨럴프라자)		
지정일자	2016.03.10	정 원	9명

2. 모집방법은 여행, 애경사 등 치매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밴드, 주간보호, 방문센터의 유선 등으로 통하여 모집하며 또는 행정관서,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추천, 가족이나 연고자의 추천에 의한다. (가족이 돌볼수 없을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5 년 01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② ① 항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본 기관과 계약의 서류는 5년 동안 보존기로 한다.
- ④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단기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단기보호급여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한다.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매년 치매휴가제 연 9일을 이용할 수 있다.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이 있는 경우
3. ‘을’은 월 연장 15일 2회를 초과하고 월 15일을 이용하고 16일 이후부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료 납부의무
 2. 단기보호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기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단기보호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10. 직원의 인권침해의 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에 협조
- ③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단기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단기보호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외출 및 외박은 ‘갑’의 건강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외출 및 외박시 동행자가 ‘병’ 이 아닐 경우 ‘을’ 은 ‘병’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행자의 연락처 및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④ ‘병’ 은 외출 및 외박 중 ‘갑’ 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 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단기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을’ 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까지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④ ‘갑’ 은 매월 이용료를 당월분 선납하며 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⑤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 ① ‘갑’ 은 단기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 이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을’ 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 ① ‘을’ 은 ‘갑’ (또는 ‘병’)이 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 ① ‘을’ 은 ‘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병’ 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단기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을’은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식사 및 간식) ‘을’은 1일 3식 및 간식 1회를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갑’(또는 ‘병’)의 동의를 얻어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17조(침실의 배정) ‘갑’의 침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갑’(또는 ‘병’)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을’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9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1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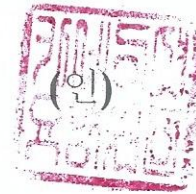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5년 01 월 01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첨부: 별첨1부 -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별첨2부-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별표 1]

단기보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2025.01.01)

○ 단기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분 류	금액
장기요양 1등급	71,970
장기요양 2등급	66,640
장기요양 3등급	61,560
장기요양 4등급	59,940
장기요양 5등급	58,300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수가	본인부담금		
		20%	12%	8%
1등급	71,970	14,394	8,636	5,757.6
2등급	66,640	13,328	7,997	5,331
3등급	61,560	12,312	7,387	4,925
4등급	59,940	11,988	7,193	4,795
5등급	58,300	11,660	6,996	4,664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기보호급여 산정방법

- ①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일 단위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 ③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은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 ④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달 단기보호와 시설

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2022.01.01)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 (3) 개인위생품비, 재료비 : 화장품, 바디로션, 요실금 팬티, 당침, 체크지 처치등 재료비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수납한다.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2) 세부기준
 - (1)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톨휴지, 비누, 수건)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 (2)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2025 년 01 월 01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양재준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단기보호 급여일 초과이용 요청서

단기보호(급여이용 및 제공)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아래 각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보호자가 아래 각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치매휴가제 11일을 이용할 수 있다.

1호 : 가족 등의 외류, 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호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설비 등) 등이 있는 경우

()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25 년 01 월 01일 ~ 2025 년 12월 31일

()와 같은 사유로 인해 2025 년 01월 01일 ~ 2025 년 12월 31일

연 2회 월 15일 초과해서 이용하고자 요청합니다. 연 치매휴가제 11일을 이용하고자 요청합니다.

2025년 01월 01일

수급자 : (인)

보호 : (인)

기준 15일

단기보호 입소자 비용 (본인부담금)

25.01

25.01

급여 종류	등 급	급여 스카 (월)	서비스 (회)	급여수가 (월)	본인 부담액	비급여 (식내 가시)	계(30일)	서비스 인 (회)	급여수가 (월)	본인 부담액	비급여 (식내 가시)	계(31일)	경감 대상자
단 기 보 호 환	1	71,970	15	1,079,550	161,930	172,500	334,430	30	2,159,100	323,860	345,000	668,860	15%
		71,970	15	1,079,550	97,160	172,500	269,660	30	2,159,100	156,460	345,000	501,460	경감(9%)
		71,970	15	1,079,550	64,770	172,500	237,270	30	2,159,100	104,310	345,000	449,310	경감(6%)
	2	66,640	15	999,600	149,940	172,500	322,440	30	1,999,200	299,880	345,000	644,880	15%
		66,640	15	999,600	89,960	172,500	262,460	30	1,999,200	179,920	345,000	524,920	경감(9%)
		66,640	15	999,600	59,970	172,500	232,470	30	1,999,200	119,950	345,000	464,950	경감(6%)
	3	61,560	15	923,400	138,510	172,500	311,010	30	1,846,800	277,020	345,000	622,020	15%
		61,560	15	923,400	83,100	172,500	255,600	30	1,846,800	166,210	345,000	511,210	경감(9%)
		61,560	15	923,400	55,400	172,500	227,900	30	1,846,800	110,800	345,000	455,800	경감(6%)
	4	59,940	15	899,100	134,860	172,500	307,360	30	1,798,200	269,730	345,000	614,730	15%
		59,940	15	899,100	80,910	172,500	253,410	30	1,798,200	161,830	345,000	506,830	경감(9%)
		59,940	15	899,100	53,940	172,500	226,440	30	1,798,200	107,890	345,000	452,890	경감(6%)
	5	58,300	15	874,500	131,170	172,500	303,670	30	1,749,000	262,350	345,000	607,350	15%
		58,300	15	874,500	78,700	172,500	251,200	30	1,749,000	157,410	345,000	502,410	경감(9%)
		58,300	15	874,500	52,470	172,500	224,970	30	1,749,000	104,940	345,000	449,940	경감(6%)
비급여 (1일식사 재료비)		3,500	3	10,500	157,500 (전액부담)	기초수급자식대비용 장사용하여도받음		3	3,500	10,500	치매휴가제 11일 사용		
비급여 (1일 간식비)	1,000	1	1,000	15,000 (전액부담)	1			1,000	1,000				
일 반	70,000							30				초과이용금액은 개인비용청구	
												2,100,000	식대포함

※ 식대, 간식비 식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